

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

신청 안내

사업목적

-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,
 - 안정적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제작 · 발표 촉진
 - 공연장 운영 활성화 도모
 -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

• 사업의 기대효과

구분	사업효과
공연예술단체	• 안정적 단체운영 기반 확보 - 공연, 연습 · 사무공간 등 물적 기반(H/W) 확보 - 기획 · 홍보 · 마케팅 등 유통 기반(S/W) 활용 • 우수 작품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
공연장	• 우수 레퍼토리 확보, 관객개발 증진, 공연장 가동률 제고 • 예술교육 등 Out-Reach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• 공연장 특성화 기반 마련
지역주민	• 우수 공연, 공공 프로그램 향유

지원신청자격

- 공연예술단체
 - 연극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
 - 단체 소재지의 제한은 없으며, 설립연한 3년 이상 (2015년 이전 설립)의 공연예술단체
 - 전문예술법인(단체) 우대

분야	내용
연극	연극분야(아동 · 청소년극, 뮤지컬 포함) 전문 극단
무용	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 등 전문 무용단
음악	실내악단, 교향악단, 합창단, 중창단, 오페라단 등 창작 · 연주 전문 단체
전통예술	음악, 무용, 연희 등 전통예술 창작 · 공연 전문 단체

※ ‘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’과 ‘예술작품지원사업’에 동시 신청 가능하나, 중복 선정될 경우
택일하여야 함

• **지원조건 : 공연장 – 공연장 상주단체 (공연예술단체) 간 매칭 및 협약체결**

- 지원신청 전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공연장 상주단체로 매칭하고 협약체결을 완료해야함
- 재단이 제시하는 협약서를 준용하여 협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협약서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

공연장 역할 (임무)	• 협약 공연예술단체에 사무실, 연습실 등 상주 공간 무상 제공 (제공 시설 내역 명기) • 협약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 •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 (작품 기획 및 제작, 홍보마케팅, 공공프로그램 운영, 성과관리 등) • 협약 공연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 •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• 공연장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(상주단체페스티벌 포함) 시 타 공연예술단체에게도 협약단체와 동일한 혜택 부여(대관료, 연습실 사용료 등 면제 및 편의 제공) • 보조금 정산 (세부내역 정산 협조)
공연예술단체 역할 (임무)	• 우수 작품 창작 (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토리) 개발 노력 • 공공 프로그램 (교육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) 실시 •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하여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• 공연장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 시, 타 공연예술단체에 대해 적극 협력 (홍보 마케팅 등) •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• 보조금 정산 총괄

- 대상 공연장

- 서울 소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,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(민간 공연장 불가)
 - ※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외에 공공문화재단 등이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 포함 (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)
 - 상주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로 운영하는 공연장에 한함 (비상주 불가)
 - ※ 상주 가능한 시설 요건
 - 사무실 : 별도 공간 제공 필수, 책상 및 컴퓨터 기본 설치, 안내판 부착 등
 - 연습실 : 공동 사용 연습실도 인정하며, 별도 연습실이 없을 경우 공연장을 연습공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(단, 활용 계획 제시)
 - ※ 지원신청 시 상주 가능한 시설(사무실, 연습실) 구비 현황을 협약서에 명기하여 제출
 -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장 무료 사용(제반 부대비용 포함)을 필수로 함
 - ※ 단, 불가피하게 공연장 사용료를 부과하고 수입금을 공연예술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‘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’ 사업비로 전액 집행할 경우 무상 제공으로 인정함.
- (지원신청 시 계획서에 기재하고, 정산 시 증빙자료 제출)

지원사업 세부 내용

• **수행 프로그램**

-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최소 ‘프로그램 I’ 중 1건 이상, ‘프로그램 II’ 중 1건 이상

구분	내용
프로그램 I (택1)	① 공연(단체초연작) 1건 이상 ② 공연(재공연작) 2건 이상 ※ 단체초연작 : 지원신청한 공연단체에서 공연하지 않은 작품으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작품 - 지원신청한 공연단체가 공연화한 작품 (단, tryout공연, showcase, 학내 수업과정의 워크숍은 공연화되지 않은 작품으로 인정) - 타 지원사업을 통해 공연된 작품 - 원작(문학, 영상물 등)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-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신청한 공연단체가 공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
프로그램 II (택1)	① 공공 프로그램 - 지역민을 위한 예술 교육 -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프로그램 - 해당 공연장 인근 학교, 복지관 등 찾아가는 공연(관객개발프로그램) ② 상주단체 간 교류·협력 - 공연장 상주단체 간 우수 작품 상호 교류를 통해 타 지역관객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장 가동율을 제고함 - 지역(시·도) 내 상주단체 간 교류 및 타 지역(시·도) 단체와 교류 추진 모두 가능 ③ 조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- 공연단체 단원의 예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(신작 개발을 위한 창작워크숍 등) - 공연장 및 공연단체 관계자(기획, 홍보, 마케팅, 회계 등)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※ 단순 단원 공연 연습 및 단원 간 회의는 불인정

※ ‘프로그램 I’은 협약 공연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며, ‘프로그램 II’는 협약 공연장 또는 공연장 인근 지역(학교, 복지관 등)에서 수행 가능

지원규모

- 지원규모 공연예술단체 당 연간 최소 8천만원 ~ 최고 1억 5천만원
 - 공연장 당 최대 3개 공연예술단체까지 매칭 가능
- ※ (참고) 2017년도 평균지원금 : 연극 7천 6백만원/ 무용 8천 3백만원/ 음악 8천 4백만원/ 전통예술 8천 3백만원
- 지원항목

구분	수행프로그램 경비	인건비	필수경비
공통기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직접 관련 경비			
집행한도	지원금의 70% 이상	지원금의 30% 이내	
집행용도	수행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	수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	수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공연장이 필요한 비인건비성 경비
집행가능 항목	- 공연 제작 경비 - 공공 프로그램, 상주단체 간 교류 · 협력, 조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경비 - 프로그램 홍보마케팅비 - 기타 관련 필수 경비	공연장 및 공연예술단체의 기획 및 행정인력 인건비	비자산적 성격의 공연장 비용 예: 조명/무대/음향 소모품 등

지원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18년 1월 2일(화) ~ 1월 22일(금) 18:00
 -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간의 협약체결완료 후 ‘공연예술단체’에서 지원 신청
- 신청방법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
 - ※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

제출서류

지원신청 시 필수제출서류	선정 후 필수제출서류
❶ 지원신청서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 · 제출 ❷ 세부사업계획서 (지정서식) ❸ 공연장 · 공연예술단체 간 협약서 (지정서식 참고) ❹ 공연장등록증 (※ 공연장등록증 상 ‘공공 공연장’이어야 함) ※ ❷~❹ 의 경우 첨부파일로 반드시 등록 (총용량 100MB 이하)	❶ 공연장 단체등록증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) ❷ 공연예술단체 설립연도 증빙자료 - 필수: 공연예술단체 단체등록증 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) - 선택: 단체 설립이 3년 이상(2015년 이전 설립)임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 자료 중 택일 1) 리플릿, 티켓 등 홍보물, 2) 언론보도, 3) 지원기관 사업수행확인서 ※ 설립연도 증빙자료는 해당 공연단체와 동일한 단체임이 증명되어야 함 ❸ 공연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증/단체증 (해당사항이 있는 경우) ※ 최종선정된 공연장/공연예술단체는 위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하며, 미제출 또는 자격미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됨 (제출기간은 최종결과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)

※ 지원신청시 필수제출서류 누락 시 행정심의에서 탈락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